삼정 KPMG

삼정KPMG Tax Newsletter

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기획재정부는 2024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후속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은 2월 5일에 종료되었고,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 곧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I. 법인세법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시 제출서류 범위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 에서는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적용 관련하여 신청서에 기재될 세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실질귀속자 증명서류 중 하나로서 '감사보고서'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금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감사보고서 이외에도 증명서류의 범위에 세무신고서,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도 포함하여 제출가능한 서류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서류제출시 국문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국세청이 인정하는 경우, 영문본만 제출 것도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 영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국채/통화안정증권 투자소득에 대한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우리나라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투자시 지급받는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행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은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국채 등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 및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신청 시 공모국외투자기구와 달리 사모국외투자기구의 경우 실질귀속자별로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금번 세법개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국외투자기구를 통한 투자 시 비과세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사모국외투자기구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에도 투자자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국외투자기구를 실질 귀속자로 간주하여 비과세신청서를 소득지급자 [적격외국금융회사등 (이하 "QFI")을 통한 투자 시 QFI]에게 제출하고 QFI는 자신의 비과세신청서를 작성 후소득지급자를 통해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추가로 소득지급자가 매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던 것을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세무서장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영 시행일 이후 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국채 비과세 경정청구절차 신설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우리나라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투자 시 지급받는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행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상에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환급만 가능했었습니다. 금번 세법개정 및 시행령 개정(안)을 통하여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국외투자기구, OFI가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청구기한: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
- ✓ 필요서류: 경정청구서, 비과세 신청서, 거주자증명서 등
- ✔ 청구절차: 비거주자, 외국법인 비과세 및 제한세율 적용 관련 경정청구 절차 준용
- ▶ 2025년 1월 1일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임직원 할인판매에 대한 법인세 익금 및 손금 처리 규정 신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임직원에 대한 재화, 용역 등을 시가 대비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세법에서는 법인이 임직원에게 제공한 할인액(시가와 실제 판매가액과의 차이)을 익금(법인 과세소득에 가산)처리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동 할인액을 손금(인건비)에 처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의 계열회사가 생산·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그 법인의 임직원에게 할인하여 판매하고, 해당 법인이 계열회사에 그 할인액을 지급하는 경우, 동 할인액 역시 손금(인건비) 처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Ⅱ. 소득세법

종업원 할인판매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비과세 규정 신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법인이 자사 및 계열사 종업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보다 할인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할인액의 근로소득세 처리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금번 개정세법에서는 법인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포함)의 임직원에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당 임직원이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정의하였습니다.

- 1. 법인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임직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 또는 제공하는 경우
- 2. 법인이 임원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 또는 제공받는 데 사용하도록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 3. 법인이 임직원에게 법인의 계열회사가 생산·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는 데 사용하도록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 4. 법인의 계열회사가 법인의 임직원에게 그 계열회사가 생산·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 또는 제공하고, 법인이 계열회사에 해당 임직원이 할인받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상기의 규정 중 '시가'의 산정에 관해서는 법인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이 실제로 지급한 가격을 시가로 보도록 허용하였습니다.

- 1. 재화의 파손 또는 변질로 인해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판매할 수 없는 경우
- 2. 탑승권, 숙박권 등 사용시기가 제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사용 기한이 임박하여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판매 또는 제공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한편, 개정세법에서는 상기에서 규정한 근로소득 중 아래에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액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A. 비과세 금액한도: Max(시가의 20%, 연 240만원)
- B. 비과세 요건:
 - ① 임직원이 직접 소비할 목적으로 구매
 - ② 일정기간(제품의 종류별로 1년 또는 2년) 동안 재판매하지 아니할 것

- ③ 공통 지급기준에 따라 할인금액 적용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모든 임직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을 것
- ▶ 적용 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거주자 판정기준 보완

현행 소득세법시행령에서는 국내에 주소나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금번 시행령개정에 따라 1과세기간 중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에 미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직전 과세기간의 거소를 둔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할 때,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서 거소를 둔 경우라면, 거주자로 간주되도록 하였습니다.

▶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Ⅲ. 조세특례제한법

R&D 세액공제 대상 비용 범위 확대 등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에서는 일반 R&D세액공제 대상 비용범위와는 달리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의 R&D 세액공제 대상 비용 범위를 위탁·공동 연구개발비, 재료비, 인건비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사무 등 범용소프트웨어 제외), R&D용 시설 임차료 등도 추가로 R&D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포함하여 일반 R&D 세액공제 대상 비용 범위와 일치하도록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R&D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클라우드 이용료도 포함하도록 하여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R&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규정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 ✓ '23.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전에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한 경우:3년간 유예
- ✓ '23.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한 경우:5년간 유예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7년간 유예)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개정으로 졸업: 3년간 유예(*) 중소기업 요건인 업종별 매출액 기준, 실질적 독립성 기준 등을 규정
- ▶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에서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을 50% 이상(경영권 지배 시30%) 인수 시 피인수법인 기술가치금액(아래 두가지 방법 중 하나 선택)의 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아래 간접법에 따른 기술가치금액 평가방법을 삭제함으로써 직접법에 따른 평가방법만을 인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i) (직접법)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특허권 등에 대한 평가액 합계
- ii) (간접법) 매입가액 (피인수법인 순자산시가 × 120%)

또한, 기존에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이 기준충족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도 피인수법인의 임원으로 계속 근무 시 세액공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금번 시행령 개정 (안)을 통하여 기준충족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도 피인수법인의 임원으로 계속 근무하더라도 지분비율이 20% 이하인 경우에는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영 시행일이 이후 최초로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IV. 부가가치세법

분할·분할합병 시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특례 신설

분할·분할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이 분할·분할합병기일부터 분할·분할합병등기일까지 재화·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분할·분할합병으로 존속·신설되는 법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수취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 (*) 해당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경우
- ▶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판매·결제대행 자료 제출 대상 확대

현행 부가세법에서는 재화·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판매·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자의 경우에는 월별 거래 명세(판매·결제대행 자료)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하여 앱마켓사업자(*)의 경우에도 해당 판매·결제대행 자료의 제출의무 대상자로 규정하여 세원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중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판매하고 이용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
- ▶ '25.7.1. 이후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분부터 적용

V. 국세기본법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시 과세당국의 요구 가능 자료 확대

현행 국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과세관청이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시 법인 조직도 및 사무분장표, 특수관계인과의 상호출자 현황, 국제거래 가격 결정자료 등을 납세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금번 시행령개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이에 추가하여 국외특수관계자의 국제거래별 구분손익계산서 및 구분재무상태표를 납세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영 시행일 이후 자료를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국제거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가중・감경 기준 구체화

금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제거래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가중 또는 감경 기준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구분	요 건	비율
가중	직전 2년 이내 동일 사유로 다시 위반	30%
	직전 3년 이내 동일 사유로 3회째 위반	50%

감경	의견 제출 기한까지 과태료 자진 납부	△20%
	제출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일부 누락 또는 미비	△50%

▶ 영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가중・감경 기준 구체화

금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가중·감경 기준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구분	요 건	비율
가중	자료제출 의무자 및 자료 제출・보완을 요구받은 자가 직	500/
	전 3개 과세기간 중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50%
	자료제출 의무자 및 자료 제출・보완을 요구받은 자가 외	500/
	국환거래법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0%
감경	자료제출 의무자가 자료제출 기한 후 2개월 이내 제출	△30%
	・보완하는 경우	
	자료 제출・보완을 요구받은 자가 의견제출 기한 내	A 200/
	자료를 제출・보완하는 경우	△30%

▶ 영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Key Contacts

If you have any inquiries, please feel free to contact the key contacts of KPMG Korea listed below:

Tax Partners (Global Tax Team)					
Oh, Sang Bum	sangbumoh@kr.kpmg.com	02-2112-0721			
Lee, Sung Wook	sungwooklee@kr.kpmg.com	02-2112-0946			
Kim, Dong Hoon	dkim@kr.kpmg.com	02-2112-0938			
Lee, Sang Moo	sangmoolee@kr.kpmg.com	02-2112-7899			
Suh, Yu Jin	yujinsuh@kr.kpmg.com	02-2112-0930			
Kim, Jung Eun	jungeunkim@kr.kpmg.com	02-2112-0283			
Cho, Sang Hyun	sanghyuncho@kr.kpmg.com	02-2112-7687			
Song, Hyung Woo	hyungwoosong@kr.kpmg.com	02-2112-0275			
Min, Woo Kee	wmin@kr.kpmg.com	02-2112-6886			
Park, Sang Hoon	spark17@kr.kpmg.com	02-2112-6672			
Lee, Jin Wook	jinwooklee@kr.kpmg.com	02-2112-3476			
Lee, Chang Hoon	changhoonlee@kr.kpmg.com	02-2112-6815			
Kang, Sung Won	kang22@kr.kpmg.com	02-2112-6771			
Baik, Chun Wook	cbaik2@kr.kpmg.com	02-2112-3339			
Kim, Yong Hee	ykim205@kr.kpmg.com	02-2112-7734			
Ryu, Su Seok	suseokryu@kr.kpmg.com	02-2112-6787			

Privacy | Legal | Unsubscibe

home.kpmg/kr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